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0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한기호·권성동·김용태

조지연 • 유상범 • 유용원

강선영 · 김 건 · 김선교

주진우 • 박수민 • 조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이래 숱한 외침과 내란 속에서 스스로 적에 대항하여 싸운 의로운 의병이 있음. 특히, 한국유격군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쇠약했던 6·25 전쟁 기간 국군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았던 서해도서 지역 등을 수호하며,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을 수행하였음.

이에 자발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이들을 기리고 지원·예우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서해도서 지역에 대한 도발과 NLL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6·25 전쟁 당시 자체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해 서해도 서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기념하며,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의 국가적 자긍심과 의병정신을 선양하 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도서 지역 수호와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 등의 비정규전에서 특별한 희생을한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기념사업회는 한국유격군기념관 및 기념탑을 건립·운영하고,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함(안 제15조).

- 바.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사.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 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8조).
- 아.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서해도서 지역수호와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 등의 비정규전에서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유격군"이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 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조직 또는 부 대의 대원인 비정규군 공로자로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 2. "유족"이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 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기념사업회의 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조직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유격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 2. 기념관 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및 조사 · 연구
-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4. 한국유격군에 관한 학예활동
- 5. 한국유격군에 관한 전사 및 역사 연구
- 6.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7.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8. 제1호, 제6호,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념관 자료는 한국유격군의 역사적 기록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면하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면하되, 국방부장관·국가

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 제11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

-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한국유격군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결산보고) 기념사업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 료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자료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 등)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 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 및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도·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22조(지원) 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3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8명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기념사업회의 최초의 회장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제4조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 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 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